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144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10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9. 2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0. 12. 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E 지분 전부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D에게 이전되고, 그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2021.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어 그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C의 D,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26. 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9. 26.에는 위 채권이 성립하여 그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9.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9.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21가소17334 사건으로 C를 상대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 이송되어 2021가소231265 사건에서 2022. 4. 14.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하며(민사소송법 제265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9. 9. 피고가 C를 상대로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소멸시효 중단을 저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집합건물 : 고유번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임실군 제3층[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구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3층 호 45.7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북도 임실군 대 246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469분의 20.6067

이 상

